마령초등학교 학생회 규정

마령초등학교 학생회

제1조(회원)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
제2조(권리 및 의무)

- ① 학생회는 초 · 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자치활동의 권리를 갖는다.
- ②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.
- ③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학교장은 학교 규정의 제·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, 학생회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학교장은 학생회의 학생 관련 행사에 대한 예산 , 편성 운영권을 보장한다.

제3조(학생회의 운영)

- ① 본교 학생회의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다.
 - 가. 학생회는 학교생활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의 지를 갖게 한다.
 - 나. 학생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의사 결정 과정을 체득하여 민주적 생활태도를 기른다.
- ② 학생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하고 운영한다.
 - 가. 정기회의는 월 1~2회 개최하며, 일시와 장소는 학교교육과정에 따른다.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단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한다.
 - 나. 회의 내용은 학교생활에 관한 모든 문제로 하되, 각 학급임원은 자기 반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.
 - 다. 회의는 민주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.
 - 라.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받는다.
 - 마. 학생회장은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바.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이나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학교장은 학생회 임원에 협의를 요청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조(학급회)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

- ① 학생회는 매 학기 초(3월, 8~9월)에 조직한다.
- ② 학급회의 운영은 학급·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, 운영에 관한 사항(학급회 대표 선출, 임기, 횟수 등)은 학급회를 통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학생회)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

- ① 학생회는 매 학기 초(3월, 8~9월)에 조직한다. 단, 학생회 임원 선출은 매 학기 말(7, 12월)에 이루어진다.
- ② 회장단은 회장 1명, 부회장 2명(5학년, 6학년 각 1명)으로 구성한다.
- ③ 회장단 입후보자는 6학년으로 하고, 부회장단은 5~6학년으로 한다.
- ④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정하며 단임제로 한다. 단, 부회장은 다음 학기에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으며, 회장은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.
- ⑤ 회장(1명)은 학생회 대표로서 집행부를 구성하고 대의원회를 주관한다.
- ⑥ 학생회 대의원회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회대표로 구성한다.
- 제6조(선거관리위원회) 학생회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.
 - ①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、운영한다.
 - ② 학교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'학교위원회'라 한다)는 선거 공고일까지 구성한다.
 - ③ 학교위원회의 위원은 4~6학년 학급당 2명씩 각 학급에서 선출한다.
 - ④ 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.
 - ⑤ 학교위원회는 학교위원회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⑥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전교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.
 - ⑦ 학교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다만 투표자 명부 작성 및 투표에 관한 일은 학급 회 대표 혹은 해당 학급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도록 한다.
 - 가.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
 - 나.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
 - 다.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
 - 라.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
 - 마.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
 - 바.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
 - ⑧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**제7조(선거일 공고)**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8조(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)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(이하 '선거권자'라 한다)은 선거 공고일 현재 4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. 단, 2학기 말에 실시하는 학생

회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권은 3, 4, 5학년으로 제한한다.

제9조(입후보 자격) 임원에 입후보하는 학생은 회장은 6학년에, 부회장은 6학년 및 5학년에 재학하여야 한다. 단, 2학기 말에 실시하는 학생회 선거의 경우 회장은 5학년, 부회장은 5학년 및 4학년에 재학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개정)

- ① 학생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회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.
 - 1. 학생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
 - 2. 관련 법령,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
- ③ 단, 제2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, 관련 법령,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(2017년 11월 14일)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3조 이 규정은 학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